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1446호(號) 1931(昭和 6)년 10월 30일 금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532호(號)

1930(昭和 5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74호(號)(조선국유철도 화물운송규칙[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]) 중(中) 1931(昭和 6)년 11월1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1(昭和 6)년 10월 30일

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별표(別表) 화물할인임률표(貨物割引賃率表) 국선(局線)과 사설철도(私設鐵道) 간(間) 발착(發著)의 부문[部] 중(中) 조선철도선(朝鮮鐵道線) 벼[粃]의 항(項) 발역란(發驛欄) 「예천(禮泉)」의 앞[前]에 「함창(咸昌), 점촌(店村), 용궁(龍宮)」을 추가(追加)함.